

도축검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검사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축 의뢰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축목적									
출하농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장명 및 농장식별번호			
	안전관리인증농장 여부		적용[],		미적용[]		절식 시작 일시		
가축 운반자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신청내용	가축의 종류 (품종)	성별	연령	생체량	총수량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수입소의 경우	수출국가명				검역계류장 도착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 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작성 방법

1. 종류가 다른 소인 한우·젖소·육우·수입소 또는 수입소의 도축검사신청을 동시에 하려면 각각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신청내용란 중에서 가축의 종류는 '소(한우·젖소·육우·수입소)' 등으로 적고, 성별 및 연령은 가금류의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신청내용란 중에서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력번호는 돼지·닭·오리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에 대하여 도축검사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 수출국가명과 검역계류장 도착일을 신청서(수입소의 경우란)에 적어야 합니다.
5. 절식 시작 일시는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사료급여를 중지한 일시를 작성합니다. (예) 2016. 3. 23. 09:00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